

제3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7. 5.(목)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⑥ 의결사항

가.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 (2012-37-138)

- 양환정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20차 위원회('12.4.10) 보고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내용

① 전파사용료 감경(안 제90조제1항, 별표 8, 9, 10,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3년),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인하(분기별 가입자당 30원) 및 고주파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경
-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를 규정한 제91조제1항을 고려하여 전파사용료 감경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포함되는 분기부터 적용

②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안 제24조제1항제4호)

- 주된 지구국으로부터 일부 주파수를 배정받아 통신하는 초소형지구국은 혼신 방지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 당초 농어촌지역의 초소형지구국에 국한하여 신고제 전환을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모든 초소형지구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③ 기술기준 고시의 위임(안 제123조제1항제1호의2)

- 해상·항공·전기통신·기타업무용 무선설비·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 시설기준 고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위임
-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방송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방송의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현행과 같이 고시하도록 개정범위에서 제외하고,
-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무선설비의 공중선 전력 출력 등의 측정 및 산출 방법'은 전파연구원장 고시사항으로 추가하여 규정

④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3)

-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위에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경우 별도 납부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법예고안과 동일)

⑤ 주파수 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절차 개선(안 제8조제2항 및 별표1)

- 시설자는 손실내용을 제출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입법예고안과 동일)

○ 향후일정

- 규제개혁위원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7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8월

나.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 (2012-37-139)

-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시청 점유율 제한규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하여 마련한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산정대상)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총 237개 방송사업자 373개 채널

※ 지상파 32개(64채널), SO 55개(104채널), PP 149개(201채널), 위성 1개(4채널)

☞ 전체 텔레비전 방송채널(421개) 중, IPTV 전용 채널(3개) 및 해외방송 재송신 채널(41개), 시청기록이 없는 채널(4개: ABS농어민방송, CARTV 등)을 제외

- ② (산정결과) 한국방송공사 35.951%, (주)문화방송 18.374%, (주)SBS 11.173%, (주)씨제이이엔엠 9.168%, (주)조선방송 9.102%, (주)제이티비씨 7.380%, (주)채널에이 3.771% 등

<2011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구 분	전 체	비 고
한국방송공사	35.951%	지상파·PP
(주)문화방송	18.374%	지상파·PP
(주)SBS	11.173%	지상파·PP
씨제이이엔엠(주)(CJ 계열)	9.168%	PP·SO
(주)조선방송(조선일보 계열)	9.102%	PP·일간신문
(주)제이티비씨(중앙일보 계열)	7.380%	PP·일간신문
(주)채널에이(동아일보 계열)	3.771%	PP·일간신문
(주)챔프비전(티브로드 계열)	3.520%	PP·SO
(주)매일방송(매일경제 계열)	2.809%	PP·일간신문
(주)씨앤엠울산케이블티브이(C&M 계열)	2.203%	PP·SO
(주)와이티엔	1.736%	PP
(주)KNN	1.551%	지역 지상파

- (1) (지상파·非지상파)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지상파채널이 62.665%, 非지상파채널이 37.335%를 차지

- 지상파 계열 PP(11.693%)까지 포함할 경우 지상파점유율은 74.358% 차지

<2011년 지상파채널 시청점유율 현황>

구분	지상파 시청점유율	계열PP 시청점유율	지상파+계열PP 시청점유율
KBS	32.107%	3.841%	35.948%
MBC	14.364%	4.008%	18.372%
SBS	7.596%	3.577%	11.173%
지역민영방송	6.652%	0.019%	6.671%
EBS	1.946%	0.248%	2.194%
합계	62.665%	11.693%	74.358%

(2) (PP 시청점유율) 공급분야 별로는 드라마 8.664%, 오락 6.758%, 영화 3.670%, 어린이 3.058%, 보도 2.710%, 스포츠 2.697%, 홈쇼핑 1.357%, 교양 1.111%, 종합편성 0.296% 순으로 나타남

- 주요 MPP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CJ계열 8.342%, MBC계열 4.008%, KBS계열 3.841%, SBS계열 3.577%, 티브로드계열 3.328%, C&M 계열 2.166%, YTN계열 1.6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계획

- '12.7월, 2011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공표
- 방송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

7] 보고사항

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 - (주)SK텔링크

○ (주)SK텔링크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 사업 폐업계획 제출함에 따라 주요 일정 및 처리방안 등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내용

① 폐업일자 : 2012년 8월 31일 (예정)

② 사업자 조치계획

(1) 폐업 안내 및 신규가입 모집 중단

- 위성DMB 서비스 이용 혼란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폐업 예정 사실을 방송자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함(폐업일 까지)

고지 경로	고지 방식
방송자막	대상 채널 : 자체채널(TU씨네마, TUBOX) 등 편성 시간 : 상시(방송화면 하단부에 고정 송출)
홈페이지	(주)SK텔링크 홈페이지(www.sktelink.com) 게시
SMS	발송 : 매월 1~10일, 1회/가입자 발송
청구서	매월 청구서 송부시 안내사항 동봉
고객센터	상담 전화 인입 시 폐업 안내 음성 노출

- 위성DMB 서비스 종료 예정에 따라 신규가입 모집을 즉시 중단함

(2) 이용자 보상 방안

- 위성DMB 이용약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한국소비자원 권고) 등에 따라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잔존가입자에게 보상을 실시함(~'13.2월)

구 분	보상 기준	근 거
가입비	가입비 납부자에게 납입액(2만원) 전액 환급	·이용약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위약금	면제	
선납요금	미사용분 반환(서비스 종료 시점 기준)	
이용료	면제(폐업 안내 시점부터 폐업시 까지)	
현금보상	1인당 1만원 지급(시청권 제약에 대한 보상)	

(3)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 정보통신망법상 방송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용 사업자이므로 폐업 시 가입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보호조치를 준수함

② 처리방안

- (주)SK텔링크의 폐업 예정 일정,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보상방안 등 조치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방송법상 방송사업(위성DMB 포함)의 폐업은 신고사항에 해당하므로 (주)SK텔링크가 폐업 예정 일정에 따라 폐업신청 제출 시 수리 처리함
- 전파법상 무선국 운용 폐지 신고 등도 수리 처리함
- 불용되는 위성DMB용 주파수에 대하여는 추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향후 일정

- 사업자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일 정	사업자 조치계획
'12. 7. 6 ~ 8. 31	위성DMB 폐업 안내 및 신규가입 모집 중단
'12. 8. 1 ~	가입자 보상 계획 안내
'12. 8월 중	위성DMB사업 폐업신청서 등 제출
'12. 9월 ~ '13. 2월	가입자 보상

- 위성DMB사업 폐업신고 수리 및 허가장 회수(8. 31자)
- 무선국 폐지신고 수리(8. 31~)

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미디어렐별 결합판매 지원 대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미디어렐별 지원대상은 제1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접수함

- 다만, 5년 미만 신생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별도 검토하기로 함

○ 주요내용

① 결합판매 지원 의무대상 사업자(미디어렐) 규정(안 제3조)

-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 대상으로 다음을 명시함

·한국방송공사와 (주)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주)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② 미디어렐별 전체 결합판매 지원 의무비율 산정(안 제4조, 별표1)

- 미디어렐이 각각 대행하는 중소방송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해당 미디어렐이 대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함

③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안 제5조, 별표2)

- 직전 회계연도 5년간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해당 중소방송사를 대행하는 미디어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산정함

④ 결합판매 균등지원(안 제6조)

- 중소방송사의 안정적인 광고수익 확보를 위해 특정 프로그램 시간대·특정기간에 결합판매가 편중되지 않도록 함

⑤ 결합판매 지원실적 관리 및 자료제출(안 제7조, 제8조)

- 미디어렐은 결합판매 매출 구분기준을 마련, 중소방송사 광고매출 발생시 결합판매 매출을 구분토록 함

- 미디어렐은 방통위에 분기별 결합판매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⑥ 결합판매 이행점검(안 제9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렐의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가 확정되면 결합판매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함

- 미디어랩이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액의 집계상 오차, 회계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규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함

⑦ 결합판매 지원규모 등의 재고시(안 제10조)

-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지원비율 및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는 직전 회계 연도 미디어랩의 영업보고서가 확정된 이후 매년 재고시함
- 다만, 당해연도의 지원 비율 및 지원규모 고시 전까지는 작년 기준을 적용하되, 고시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 보정하여 적용함

○ 향후 일정

- 행정예고 : '12년 7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2년 7~8월
- 위원회 의결 : '12년 8월

Ⅷ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 7. 12(목).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40)